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산림문화 관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023. 6.20. 공포)됨에 따라 산림문화진흥전문기관 업무의 범위,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 및 지정이후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를 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별표 3의6, 별표 3의7, 별표 4)

-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을 정하고, 전문기관의 취소,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나.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신청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 지정구역 면적 10분의 1 미만 확장 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생략(이 경우 누적된 변경 면적이 10분의 1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다.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기준 완화에 따른 서류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호, 안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

-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의 대부등 검토결과서 첨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관계기관장(제

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을 말함

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및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에 따른 서식 추가(안 제14조의2제1항·제19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1
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신설)

- 취소에 따른 서식 신설(별지 제13호서식·제14호서식)

마.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지정 발급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22조의3, 안 제22조의4,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 신설(별지 제15호서식), 전문기관 지정서 발급
(별지 제1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1부”를 “1부[국유림 대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관계기관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국유림 대부등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취소)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첨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에게 국유림 대부등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검토결과서.

제19조의4 앞에 “제4장 숲길 등”을 삭제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제19조의3,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취소)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5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숲길 등

별지 제4호서식 나목 중 “1부”를 “1부(다만, 국유림 대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의 대부등 검토결과서 1부)”로 하고, 같은 서식 마목 중 “한다”를 “하며, 지정구역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8호서식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유림 대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의 대부등 검토결과서 제5장의 제목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를 “산림문화의 진흥”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①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문화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그 밖에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이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지정
자연휴양림 ☐ 지정해제 신청서
☐ 지정구역 변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기관명)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구역면적	m ²
--------	------	----------------

자연휴양림 명칭	
----------	--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신청사유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나.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국유림 대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의 대부등 검토결과서 1부) 다.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라. 설치하려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마.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구역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해제신청의 경우: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취소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기관명)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구역면적	ha
--------	--	------	----

자연휴양림의 명칭	
-----------	--

사유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현지조사	접수
		↓
		검토·확인
		↓
		심사
		↓
통보		승인(결재)

**산림욕장등 [] 조성계획
[]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기관명)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구역면적	ha
산림욕장등의 명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욕장등 [] 조성계획 []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시설물(도로를 포함합니다)의 종류·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나.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다.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라.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마. 산림경영계획 바. 국유림 대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의 대부등 검토결과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현지조사	접수 ↓ 검토·확인 ↓ 승인 ↓ 승인서 작성	
통보	←	←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취소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기관명)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구역 면 적	ha	
산림욕장등의 명칭				
사 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현지조사	→	접수
				↓
				검토·확인
				↓
				심사
				↓
				승인(결재)
←	←			
통보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신청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신청기관의 소재지	연락처

신청내용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주요 산림문화진흥 사업의 개요
	세부사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직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6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 월일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유의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나.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절차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1조의2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말한다.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 ----- ----- ----- ----- ----- ----- ----- ----- ----- 하며,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제19조(산림육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육장·치유의 숲·숲

1. (현행과 같음)

2. -----
----- 1
부[국유림 대부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관계기관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국유림 대부등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취소)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산림육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

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 설>

② ~ ⑥ (생략)

<신 설>

제19조의2 · 제19조의3 (생략)

제4장 숲길 등

— •

1. ~ 5. (현행과 같음)

6.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산림
육장등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에게 국유
림 대부등 가능 여부를 확인받
은 검토결과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취소)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소 신
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 제19조의4 (현행 제19조
의2 및 제19조의3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19조의4 (생 략)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신 설>

<신 설>

제4장 숲길 등

제19조의5 (현행 제19조의4와 같음)

제5장 산림문화의 진흥

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의 업무)

①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 따
라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산림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의 협력체계 구축
2. 그 밖에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
해 필요한 업무

제2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
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이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전문기관 지
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연 락 처	(042) 481 - 4215